

의안번호	제 163 호
의 결 년 월 일	1997. 5. 24. (제 63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7. 5. 6.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1997. 5. 6.

제출자 : 보은군수

1. 제안이유

-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기금의 조성지원(제2조 2호)중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위배

2. 주요골자

-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제2조 2호를 삭제한다.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6. 제안자 의견 :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안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u>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u> <u>찬조금등 기타수입</u>	제2조【기금의 조성】..... 2. (삭 제)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 (1995. 9. 19 조례 제 1432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읍·면·동주민자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 ① 2.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수입

제 3 조【읍·면·동주민자치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라 한다)의 읍·면·동주민자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지원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읍·면·동주민자치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읍·면·동주민자치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자로서 읍·면·동주민자치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주민자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읍·면·동주민자치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주민자치하지 아니한다.

2446

새수증대로 힘있는 충북건설

충 청 북 도

9360 705 / 청주시 문화로 39 / 전화 (0431) 220-2313, 팩스 2313 / 송신 200 2446 / 담당 : 한천우

문서번호 재경 13300 - 347

시행일자 1997. 3. 26

(경 유)

수 신 터 01 - 12

참 조 세심(재무)과장

선	지
결	다 235 885
접	일자 97.3.26
수	번호 885
처리과	새수증대
담당자	한천우

제 목 기부금품관련 각종기금조례 정비

1. 내무부 재경 13300 9 ('96.1.5)호와 관련임.
 2. '96. 7.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품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련 조례는 실행조사한 바 복지가 성금품, 찬조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어 정비대상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너
 4. 실.과.사업소 및 시.군에서는 '97.5월말까지 관련조례중 기부금품관련조항을 정비하시고 정비결과를 제출(조례개정내용 사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인 : 1. 기부금품 재원관련 기금조례 현황 1부.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주요내용 1부. 끝.
3. 내무부 관련공문 사본 1부.
4. 조례개정 사례 사본(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충 청 북 도 지 사

기부금 재원관련 기금조례현황

단체별	조례명 (기금명)	기부금 근거조항	비고
세	17개		
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자립기금, 상하기금)	제4조1항3호 제2조2호	복지가 성금품 복지가 성금품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임세민생환안정기금융자조례	제2조2호 제2조 단서	복지가 성금품 한조금수입
충주시	영세민생환보호안정기금융자조례	제2조	한조금수입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임세민생환안정기금융자조례	제2조2항2호 제2조	기타성금품 한조금수입
청원군	문화상하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 제3조2호	복지가 기탁금 복지가 성금품
보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2호	복지가 한조금
옥천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2호 제2조2호	복지가 한조금 복지가 성금품
괴산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4조1항3호 제2조2호 제2조2호	복지가 성금품 복지가 한조금 복지가 성금품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조2호 제4조1항3호	복지가 성금품 복지가 성금품

※ 도내 총기금수 70개 (도 14 시군 56)

